

제26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4월 24일 (목)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4. 24.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1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4.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오재현)

###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현실운영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 → 제104조 및 제151조

나. 혁신담당관실 소관 “해피콜(Happy Call)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별표 일련번호 1)

-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 제고와 객관적 운영을 기함  
※ 사무내용 :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불만요인, 건의사항 등 조사

다. 전략산업팀 소관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별표 일련번호 5)

-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경쟁력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

라. 청소년아동과 소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

-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

마. 보건위생과 소관 “한센이동진료사업 사무” 삭제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이 개정조례안은 해피콜(Happy Call)센터<sup>1)</sup> 운영의 신규 민간 위탁과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1) Happy Call센터는 2006.7.1 혁신담당관실 내에 설치되었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불만요인·건의사항 등을 전화로 조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Happy Call센터 운영의 신규 민간위탁, 경쟁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 도 직영(直營)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고,
- 또한 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동 진료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다만, Happy Call센터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 시 운영비에 대한 비교분석 및 민간위탁 시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등 고용 관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 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민 간 위 탁 사 무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혁신담당관	1	○ 해피콜(Happy Call)센터 운영 사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보통신담당관	2	○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경제정책팀	3	○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사	기능장령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전략산업팀	4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	과학기술관련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
	5	○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 도 공예품경진대회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기업지원팀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동법시행령 제54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7	○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 - 청주지방산업단지 - 현도지방산업단지 - 부용지방산업단지 - 대소산업단지 - 대풍지방산업단지 -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단 임대사무 포함)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u>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지방자치법</u>」 <u>제104조 및 151조</u>……</p>

**【별표】**

### 민간위탁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신설)			혁신 담당관	1	○해피콜(Happy Call)센터 운영 사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	<u>지방자치법</u> <u>제104조</u>
정보통신 담당관실	1	(생략)		<u>지방자치법</u> <u>제95조</u>	정보통신 담당관	2	(현행과 같음)		<u>지방자치법</u> <u>제104조</u>
경제정책팀	2	(생략)			경제정책팀	3	(현행과 같음)		
전략산업팀	3	(생략)			전략산업팀	4	(현행과 같음)		
	4	○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 도 공예품경진 대회	충북공예 협동조합 청주상공 회의소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제 40조 제 60조 및동법시행령제 45조		5	○ 민속공예 산 업육성사무 - 도 공예품경진 대회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기업지원팀	5~6	(생략)			기업지원팀	6~7	(현행과 같음)		
보건 위생과	7	○ 한세이동진료 사업 업무	한국한세 복지협회 충청북도 지부	<u>전염병예방법</u> <u>제23조 제48조</u>			<삭제>		
청소년 아동과	8	○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청소년 관련법인	<u>청소년기본법</u> <u>제61조</u>			<삭제>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1조 (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 【전염병예방방법】

제2조(정의) ②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③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제4조 (의사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도지부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008 한센사업지침】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의 주요업무>

-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 ③ 한센병이동진료, 외래진료
- ④ 이동진료 관할지역 정착농원, 한센시설에서의 진료
- ⑤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 ⑥ 시·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 정착농원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 ⑦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
- ⑧ 시·도 보건(위생)과와 업무 협조
- ⑨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사업 등